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정보화 전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

이 선 화*, 박 기 식**, 신 범 철***

요 약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론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 주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보화라는 현상은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으로써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화사회에 대한 통일적이고도 엄격한 개념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략적으로 이제까지는 노동, 재화, 자본 등의 물질자본이 경제·사회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가 정보화사회라고 인식할 수 있다.

미래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정보화의 진행정도가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전략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미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Global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표준체계연구실장

*** 충남대학교 석사과정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 일본의 신사회자본건설, 싱가포르의 IT-2000 프로젝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각국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정보화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의 능력개발, 능률적인 행정의 실현이며, 나아가 모든 통신망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망처럼 통합하여 정보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이 단일망에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유통시킴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전략 내지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각국의 정보화전략에서는 정보의 안정성과 통신망의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비단 정보화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정보보호의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크고 작은 범죄에서부터 정보의 보고로 알려진 Internet의 해킹문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종류의 정보침해 문제들이 최근들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법적 측면의 흐름은 두 가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하나는 정보화사회를 촉진시키고 건설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책적 성격을 지닌 각종 법규들의 제·개정과 운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정적, 왜곡된 행태를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대응의 문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보호의 문제를 다룰 때 관심이 되는 것은 후자의 문제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한 많은 개별법들이 입법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보호의 문제는 법·제도적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었다¹⁾. 정보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법·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통신망에서의 정보침해를 막기 위한 암호기술이나 통신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들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위해 연구를 하였다 해도 개별법의 제정이라든가 개정 등의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서 수행되어 왔고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전법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사회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법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헌법으로부터 개별법에 이르기까지 정보보호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한다. 즉 현재 국내법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으며, 이를 침해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헌법에서부터 개별법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여 검토해 보고,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 정보보호 관계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명해봄으로써 향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론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문제의 연구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정보보호의 의의

글의 전개에 앞서 간략히 정보의 개념과 그 보호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자료이며 문제해결에 유용한 것(A.M. McDermough), 사용자에게 의미가

1) 이에 관해서는 안병성,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에 대하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제1권 제1호, 1991.4. 및 박영호외,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정보학회지 제4권 2호, 1994.6. 등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있고 현재나 미래의 행동이나 결정을 위해 참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 (G.B.Davis), 어떤 상태 또는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유형·무형의 실체 (C.E. Shannon), 미디어와 메세지가 결합된 것으로 복수의 주체간에 교신하여 공유시킨 것(일본경제기획청), 시스템에 질서를 준 것 때로는 의미있는 기호의 계열(今井賢一)이라는 등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아직 통일적인 개념은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공통적인 개념을 찾는다면 사용자나 사용조직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원(情報源)을 의미하고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한 것이 정보²⁾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보를 정의해 볼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개념적 정의나 한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프라이버시권 보호, 알권리 보장, 정보사용권 및 정보참가권의 보장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³⁾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정보와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의 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알권리는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로 정보공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또한, 정보사용권은 국가나 대기업의 정보독점을 막고 사회 전체체 내의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보참가권은 중요한 정보원의 관리에 대한 참가와 그에 입각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들의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Ⅱ. 헌법에서의 정보보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상 정보보호 문제도 구체적 보호 규정을 두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원(權源)의 확인을 통한 보호의 문제이다.

정보보호문제를 헌법에서 살펴볼 때에는 기본권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정보화사회는 고도의 정보수집·처리·유통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보의 확산을 통한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지만 반면에 정보의 왜곡과 독점을 초래하여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 비밀영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말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와 정보침해로부터의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영역보호의 헌법적 보장문제가 요청된다 하겠다.

헌법상 정보의 수집·처리·유통 등 정보의 이용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련 기본권을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처리·유통은 각각 서로 다른 기본권 영역에서 보장되고 있다. 먼저 '정보의 수집'은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나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문제로 알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다. '정보의 처리'는 정보를 만들거나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로, 언론기관에 있어서는 편집권·편성권 등의 보호문제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리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사상·양심·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전달(유통)'이라 함은 개인이나 언론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를 특정인이나 일반공중에 알리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보호로써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언론

2) 정보의 개념이나 특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상덕, "정보사회와 정보", *통신정책연구*, 7권 1호, 1992. 봄호, pp. 2~16 참조.

3)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0. pp. 554 참조

기관의 독점화 등에 대응하여 일반인이 그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스권이나 반론권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정보의 침해로부터의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영역보호의 헌법적 보장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침해로 말미암아 손실되는 기본권의 영역을 통한 구제의 문제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보는 프라이버시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양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정보의 침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보호나 재산권의 보호영역에서 보호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등이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질병문제 등을 조사·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개인은 이를 열람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즉, 사생활 비밀보호(헌법 제 17조) 또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헌법 제 10조)의 권리로부터 주장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인 경우 이의 침해문제는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보장의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된 헌법상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되는 기본 권리의 의의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 개념을 광의로 본다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

정·사용중지·봉쇄·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지배권을 말한다. 이에 대해 좁은 의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⁴⁾, 일반적으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 했을 때는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좁게 해석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포함되지 않고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정보열람청구권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그 기관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유기관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일반의 소송절차나 독립된 감찰기관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문서 이외의 필름, 자기테이프 등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알권리의 일환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⁵⁾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pp.460

5) "...현행 실정법상 청구인에게 형사확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복사해 줄 수 없다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 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의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결정 1991.5.13. [90 헌마 133]). 자세한 것은 이승우,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사법행정, 1990. 4, pp.60~67. 참조

2) 자기정보정정·보완청구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그 요구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을 정정·보완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입증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정보보유기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정보보유기관이 법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정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은 당해정보의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정보보유기관은 당해청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용중지·삭제의 유무 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권리로서 현재까지 통일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2. 통신의 비밀보호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불

가침을 의미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그의 의사나 정보를 통신·전화·전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여기에서 통신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격지자(隔地者) 간의 의사의 전달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의사전달 이외에 물품의 수수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신의 비밀보호는 단순히 편지나 우편물의 전달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기에 헌법 제 18조에서 보장되는 통신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편지, 기타 우편물 외에도 전화, 전신, 텔레스, 팩스 등 통신망을 통한 의사의 전달도 포함되며 전파를 통한 의사전달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⁶⁾ 그리고 통신의 비밀보호란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그 통신의 형태, 당사자, 전달방법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유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주요내용은 열람금지, 누설금지, 정보금지라 할 수 있다. 열람금지란 통신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신물을 열거나 또는 읽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누설금지란 통신업무 때문에 알게된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며, 정보금지란 통신업무내용을 정보활동의 목적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내용을 보호해주는 사생활보호의 수단적 의의를 가지며, 통신수단을 통해 사생활의 영역이 확대됨을 가정할 때 사생활의 영역을 넓혀주는 기능도 있다고 볼

6) 현재 주요 헌법교과서에서는 통신수단으로서 전파등에 관해서는 다른 통신수단과 달리 명문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무선전화등의 개인무선통신기기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역시 통신의 자유에서의 통신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개념을 보면(법 제 2조 참조),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며,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명문으로 해결하고 있다.

수 있다. 또한 통신이라는 정보의 이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므로 이러한 정보유통의 자유는 재산권보호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알권리

알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자유'라 불리기도 한다.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한다. 바로 이런 정보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알권리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알권리는 정보생활이 실제에서 정보획득의 문제로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정보생활의 실제에서 자신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경우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알권리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구하거나⁷⁾, 헌법 제 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구하는 견해⁸⁾와, 알권리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로 이해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제 1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 34조 1항) 등 여러 헌법조문에서 찾는 견해⁹⁾로 나뉘고 있다. 알권리는 정보를 획득하여 현실생활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의 현실생활이란 일상적인 대화(존엄성이나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

련), 의사표현의 전제로서의 의사형성(표현의 자유 관련),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여론형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알권리를 규정하는 개별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헌법적 근거를 관련 헌법조문들을 근거로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알권리의 법적성격을 보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는 견해와 알권리를 좁게 해석하여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만을 지닌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알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인 성격을 띠며, 또 알권리가 공공기관에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의미할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님을 감안할때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액세스권

언론의 독점화와 집중화로 인해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이의 이용과 접근을 거부할 경우, 일반국민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에의 자유로운 접근·이용을 헌법상 보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액세스권이라 한다.

액세스권의 주된 내용은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 접근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정보의 수집·처리·유통이라는 정보생활의 제단계에서 정보의 전달, 특히 개인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수대중에게 전달을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 액세스권과 관련하여 반론권도 문제되고 있는데,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액세

7) 김철수, 헌법학신론, pp.321.

8) 문홍주, 한국헌법, 협암사, 1987. pp.273; 권영호, "국민의 알권리", 고시계, 1993. 12. pp.73.

9) 권영성, 전개서, pp.510.

스권 속에 반론권을 포함시키기도 하고¹⁰⁾ 반론권을 액세스권과 분리하여 보기도 하나¹¹⁾, 반론권의 내용이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역시 언론기관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액세스권의 한 내용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이러한 액세스권의 헌법상 근거를 논함에 있어, 헌법 제 21조 4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서 찾는 견해¹²⁾.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찾는 견해¹³⁾. 액세스권과 반론권을 구분하고 액세스권은 헌법 제 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닌다”는 규정과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生存權)를 지닌다”는 규정 등 여러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며, 반론권은 헌법 제 21조 4항에서 구하는 견해¹⁴⁾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실질적 의의를 고려할 때 마지막설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고전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액세스권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액세스권은 정보화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언론 기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나 정보력은 일반대중 개개인을 훨씬 능가하기에 이의 보장이 없다면 국민은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는데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이러한 측면에서 국

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헌법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III.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헌법에서의 정보보호문제는 기본권의 문제로서 살펴보았으나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문제는 정보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규의 문제로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침해로부터의 정보보호의 법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차원으로 순수한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는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공공기관 및 타인에게 축적될 수 있어 문제의 인식 및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차원의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문제를 인식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몇몇의 개별법에서도 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정보보호 차원은 재산권의 보호문제이다.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중요성이 다른 재화 등에 비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이므로 정보의 재산적 가치가 점증하는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정보의 침해는 프라이버시와 무관하더라도 (혹은 함께 얹혀서) 재산적 평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법규에서도 많은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권리 자체의 보호를 강조하는 일반 개별법규와는 다르게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 및

10) 허영, 전계서, pp.523.

11) 권영성, 전계서, pp.513.

12) 구병식, 전계서, pp.432.

13) 허영, 전계서, pp.524.

14) 권영성, 전계서, pp.513.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의 경우가 있다. 형법에서는 정보를 침해하며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침해행위를 최소화하게 한다. 특히 과거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최근의 형법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법 및 형법개정안에서의 정보침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려 한다. 정보의 유출이나 침해는 서면이나 기타 청취물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과거에서부터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컴퓨터 및 통신망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 2조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의 목적은 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수집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동법은 제정 목적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수집에 의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고에서의 정보보호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문제의 핵심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총 5장 25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에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 신상정보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명단을 자사 광고홍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3조)고 하여 동법이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 일반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어(제 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도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 2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 보유범위, 사전통보사항,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개인정보화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 3장은 처리된 정보의 열람·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 및 열람제한, 정정청구, 불복청구, 대리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4장은 보칙규정으로서 수수료,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정부투자기관의 지도·감찰,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5장은 벌칙규정으로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개인정보취급자로 개인정보 누설 혹은 부당이용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으로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2.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의 보안에 있어 무역업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대부분의 무역업자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겠으나 개인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문제는 전술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재산권적인 문제가 된다.

동법 제 18조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규정으로 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되며(제 1항),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 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지정사업자의 직원이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항)고 규정하여 정보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 25조에서는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26조에서는 제 18조 제 2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꾀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 26조에서는 지정사업자가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3.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

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은 아니며, 다만 통신의 관리 차원에서 제 22조에 비상시의 통신확보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동법의 하위 법규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신뢰성기준을 주목할 만하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에서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994년 제정된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신뢰성기준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기준 제 4조에서 이용자의 식별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시스템을 취급하는 정보통신설비에는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제 1항)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차원에서 부당한 이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자료별로 사용자에 대한 접속 가능성역 및 취급범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제 2항)고 규정하여 역시 통신설비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법 역시 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나 본문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을 따로 두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 54조, 제 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비밀의 침해 또는 누설을 방지하는 규정을 통해 전기통신역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198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역시 정보보호를 위하여 입법된 것은 아니지만 본법의 내용중에는 전산망의 단전성과 신뢰성에 관련하여 정보보호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 22조에서는 우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침해 또는 해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 29조, 제 30조)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정보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 25조, 제 30조)고 규정하여 전산망과 관련하여 정보의 침해 및 누설이 있는 경우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 24조에서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산업·경제·과학기술 관련 중요정보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의 하위법규 중 동법 시행령과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있

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 28조에서 규정한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서는 전산망보유자들로 하여금 전산망의 기능유지와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전산망 추진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 11조에서 정보의 이용체제 구축 및 공동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정보 역시 그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전산망 안전신뢰성기준 제 6조 등에서 통신보안등을 위한 기능구비요건 등을 정함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행정전산망 관리지침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6.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법은 통신회선이 아닌 전파를 통한 정보유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 4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접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1989년에 제 42조의 2를 개정하여 시설자 및 무선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선통신관계자에 의한 정보침해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81조에서는 동법 제 42조의 비밀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42조의 2 통신보안의 준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고 규정하여 무선통신에 종사하는자의 처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관계자에 의한 침해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에서는 동법에서 정했던 통신보안준수사항의 상세내용 및 통신보안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통신보안용 약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선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통신보안용 약호자재의 사용승인,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용 약호자재관리세칙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7.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도청 장치 등의 발달로 인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1993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다. 결국 동 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핵심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공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듯이 동 법 역시 우편물, 전기통신의 비밀보호문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우편물의 검열과 관련하여 우편법(환부우편물 등의 처리와 관련),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행형법·군행형법(구속·복역중인 자 관련), 파산법(파산자 관련) 또는 관세법(수출입물 관련) 등에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던 것을 통신비밀 침해에 관한 일반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동법 제 3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제 16조)하여 통신비밀을 직접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동법은 이 외에도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도청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금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취득한 내용의 공개금지 및 사용제한,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및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각종의 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하위법규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시행령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비밀유지에 관한 규칙을 두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 11조 제 2항에 의하여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8.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4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제 8조에서 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며 전자문서 교환방식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보화 추진정책을 도입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제 1항) 한편으로는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 8조 3항에서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에게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관리와 산업정보의 신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컴퓨터 화일에 수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의 공개를 금하여 전자문서에 수록된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상거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는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이의 행사를 금하고 있다. 또한 동조 5항에서는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훼손하거나 그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의 침해를 금하고 있으며, 전담사업자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업무상 알게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7항에서는 전담사업자에게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동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위반의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그동안 정보처리업체에서 계속 주장해 오던 인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업정보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타법과는 좀 다르게 본래의 제정사유가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술인력양성, 정보유통 촉진, 연구시설 확충 등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차원보다는 산업정보의 유통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정보망의 안전·신뢰성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신용정보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

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95년 1월에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현대사회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정보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화사회에서 사생활 비밀정보로서 보다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오용·남용을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3장에서는 신용정보의 모집,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 15조에서 정보의 모집·조사에 제한 규정을 두어 국가기밀·기업의 영업비밀·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제 4장에서는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3자의 침입등 정보의 변경·훼손·파괴행위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 5장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 23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목적외 사용의 금지(제 24조),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등의 인정(제 25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제 26조)과 업무목적의 누설금지 등을 규정하여(제 27조) 신용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동법은 올해 1월에 제정된 법으로 시행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위한 세부법령들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운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10. 형법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법이라 할 때는,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1953. 9. 18 법률 제 293호)만을 의미한다.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형법은 그 침해행위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였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침해도 반드시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형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구성된 신형법전이 입법예고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형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관련조항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는 결국 컴퓨터범죄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o 업무방해죄(개정안 제 193조 제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컴퓨터 사기죄(개정안 제 211조)

컴퓨터등 정보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재물손괴죄(개정안 제 299조)

타인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공전자기록 위작(僞作), 변개(變改)죄(개정안 제 306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위조등 공문서행사(개정안 제 308조)

제 303조 내지 제 307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 어진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o 비밀침해죄(개정안 제 182조 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전자기록 위작, 변개죄(개정안 제 312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개정안 제 314조)

제 310조 내지 제 31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 어진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o 공무상 비밀침해죄(형법개정안 제 380조 2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공무서류등의 무효화죄(개정안 제 381조)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서신개파죄 등 정보보호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정보를 침해하는 각종의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법은 정보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다.

11.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별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외에도 여러개가 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1994년 하반기에 입법예고된 바 있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알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를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저작권법(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저작물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프로그램의 보호), 특허법(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 등도 개별조항의 차원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국가안전기획부법이 있다. 동법의 다른 측면이란 정보보호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전기획부 업무의 특성상 국민의 정보취급과 이로 인한 침해 가능성의 측면에서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법의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보안의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IV. 현행법규상 문제점

1. 헌법에서의 정보보호 문제

헌법에서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나 알권리 등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인권의 하나로서 등장한 것들이어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어느 정도 헌법상 권리로서의 틀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의 경우에도 아직은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행 헌법이 정보란 개념을 포함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정보의 개념에 통일된 정의가 없을 뿐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보보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는 개별 권리의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될 뿐 관련 기본권과 연계된 종합적인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보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연계성이 결여된채 개별적인 시각에서 살펴봄으로 인해 통신의 비밀보호는 보호법익이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적 문제가 혼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프라이버시적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고, 알권리는 정보수집의 자유로서 대상정보의 성질에 따라 사상·양심·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함께 보아야 함에도 정보의 내용은 외연한채 단순히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려 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정보의 자유보장과 정보침해로부터의 보호간에 갈등이 예견되고 있는데 정보의 자유와 정보의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정보 유통을 중시한 나머지 정보수집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보장한다면 다른 한편에서 정보의 유출이 문제되고 정보유출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정보수집활동을 제한하면 정보수집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양자간의 합리적인 조정기준의 마련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자유보장과 정보침해로부터의 보호간의 조정문제도 관련 기본권의 체계적 인식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개정된 여러 헌법이론서를 보면 정보문제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문제의 인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영성교수나 구병식교수의 교과서 등에서 정보원과 정보의 수집·처리·전달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기본권을 살피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시도가 본 궤도에 올

라있다 하기엔 이론감이 있으나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는 실제 정보생활과 관련하여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차원의 연구가 계속되고 정립되어 정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정보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 문제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기본권의 내용 중 정보침해문제는 주로 프라이버시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정보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프라이버시보호에 치중했던 정보관련 기본권의 분야에서도 이제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환경권처럼 개별조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정보보호의 문제는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소유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보장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현행 헌법체계에서 찾으려 한다면 통신의 비밀보호를 제외하고는 앞서 살펴본 관련되는 여러 기본권조항의 부분부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나, 합리적인 근거하에 관련기본권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적 근거를 구할 수 있을 때 타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이론구성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본권의 틀속에 넣어두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좋은 예로, 현행 헌법에서처럼 알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속에서 구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일 뿐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보전달의 자유이고, 알권리는 정보수집의 자유라는 점에

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한 전제로서 정보수집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차원의 정보수집은 표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알권리의 문제는 표현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알권리 자체를 언론출판의 자유속에 가두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알권리를 그 내용 그대로 정보수집의 자유로 인정하며, 여타 정보관련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게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즉, 현재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프라이버시에, 정보유통의 비밀보호라 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권은 개별조항에,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하여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정보보호관련 기본권을 조화스럽게 연결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정보의 문제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시되어 기본권의 차원에서 정보권이 논의되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이론의 토대하에 정보권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권을 조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문제

개별법으로 정보보호의 문제를 규정하거나 타 법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를 개별조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3-4년 전부터이다. 앞서 많은 개별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롭게 제정 혹은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과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침해자에 대한 처벌정도가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은행을 비롯하여 전산망사업 등은 하나의 커다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많은 업체와 국민의 사회·경제적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며, 그 침해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경제적 손실 역시 상

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산망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를 주어 업무처리에 방해를 한 자는 형법개정안 제 193조 2항의 업무방해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그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형량이나 벌금이 미약하다. 참고로 무역업무자 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역정보를 위조·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형량이 많고 벌금이 높아야 좋은 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그 처벌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두번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침해자의 처벌규정의 형평성 문제이다.

〈표 1〉을 보면 정보침해에 대응하는 관련 법규의 형량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관계자의 직무관련 비밀누설에 의한 비밀침해의 경우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개정안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법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표에서 보여지는 몇몇의 경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법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법에서 같은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다를 경우 명

석한 법률가들이 아무리 법 적용을 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법적 안정성에는 커다란 혓점이 생기게 된다. 이는 개별 법의 입법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으나 법규의 제정에 앞서 전체적인 관련 법규정의 검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놓게 한다. 향후 개정시에는 내용상의 상호 보완적인 검토 뿐 아니라 이때의 양형(量刑)체제도 함께 고려하여 정보침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조항에는 권한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권한없는 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사용자가 타인의 컴퓨터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여 본래의 소유자(업무담당자 등)가 자신의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용절도는 아직 처벌근거가 없다. 그런데 형법개정안 제 198조 1항에서는 자동차등의 불법사용죄라 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자동차 등의 사용절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정보기기의 이용이 자동차 등의 이용 못지않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마땅히 이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1〉 정보침해에 대한 형량의 비교

범죄종류	관련법규	구성요건	처벌내용
정보내용의 위·변조에 의한 정보침해	형법개정안	무역업자 등의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의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정보내용의 위·변조 등을 통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내용의 위·변조 등을 통한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인의 비밀 누설 등에 의한 정보침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 정보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	무역업자 등의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의 비밀을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인 통신비밀을 침해·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을 침해·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에 관하여 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도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형법개정안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저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제공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자의 직무관련 비밀 누설에 의한 비밀침해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정보의 비밀을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	지정사업자 등의 전형적 임원의 업무상 저득한 비밀 누설·남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시설자·통신사무종사자·무선설비이용자의 통신보안사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개정안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서·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저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하였던 자가 그 재직중에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정보관련자의 직무상 저득한 비밀누설 혹은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관련자의 직무상 저득한 비밀의 누설 혹은 이의 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V. 결 론

개별법에서 규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별법상의 정보보호 내용과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지금까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헌법상의 권리와

〈표 2〉 국내 정보보호 관계 법규

법 규 명	주요내용 / 관련규정	관련 하위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업무 자동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정보보호 규정 -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제 18조) -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공개(제 19조) 	
전기통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법규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신뢰성 기준 확보를 규정(제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신뢰성기준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보호와 타인의 비밀보호 - 통신의 비밀보호(제 54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요정보의 해외유출방지 및 타인의 비밀보호 - 전산망의 안정성 등(제 22조) - 중요정보의 해외유출제한(제 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법 시행령 -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산망안전신뢰성 기준 - 행정전산망 관리지침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를 통한 정보유통보호 - 비밀의 보호(제 42조) - 통신보안의 준수(제 4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시행규칙 - 통신보안용 약호자재관리세칙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전체에 걸쳐 통신자유보장 - 통신 대화 비밀의 보호(제 3조) - 비공개의 원칙(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형법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범죄 대응 규정 - 업무방해죄(제 193조 제2항) - 컴퓨터사기죄(제 211조) - 비밀침해죄(제 182조 제2항) 등 	
공업 및 에너지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성 확보 - 안전관리조치 강구의무(제 8조) - 내용공개금지(제 8조) - 위조·변조·훼손금지 등(제 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 신용정보전산망 안전시스템보호(제 19조) - 신용정보주체 보호(제 5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촉진기본법안(개인의 정보보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프로그램의 보호) • 저작권법(S/W, DB등 편집물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통신비밀보호) •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모든 법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가 법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의 보급이나 전자통신망의 구축이 미비하였을 당시에는 이를 통한 정보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각종 정보기기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고, 통신망도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연락망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생활의 기반 구조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더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국이 정보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진전되고, 고도 정보화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책의 미비가 문제되어 왔으며, 불특정 다수에 대해 피해를 주는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었다. 이에 그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도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학계에서는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알 권리, 액세스권 등의 새로운 권리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법의 차원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보호에 관한 많은 조항들이 기존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새로운 정보침해유형에 대응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은 앞서 살펴본 몇몇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해결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조항은 각각의 개별적 범위에 국한된 나머지 전체적 법제의 통일이나 균형문제 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좋은 예가 이미 살펴본 정보침해자 처벌규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별법규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다르게 취급된다면 이는 실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침해유형의 대응문제와 동시에 정보보호 관련법 규의 조정문제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 때 관련법규의 단순한 통폐합이라는 차원에서 조정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정보보호라는 전체적 시각에서 정보보호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보호법규 역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정보관련 입법이나 전체 법률속의 한 분야이므로 관계법과 연계하여 법규의 충돌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호법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의 정보관련 법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보자유법과 정보공개법의 충돌문제가 정보관리권의 한계문제를 두고 양자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고, 그 밖의 선진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비밀준수관계법제·컴퓨터범죄방지법제·정보화사회촉진법제 등의 조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과거 개별법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곧 닥쳐올 문제이기도 하다.

향후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개정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며, 또 이 외에도 기존의 법을 시행해 나가며 더 효과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지금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면 공인전산감사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공인전산감사제도는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의 처리, 전송 등 각 분야에서 역기능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기기 등 하드웨어 측면도 고려하며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나 이에 관해

서는 현재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및 연관기술의 이론적·실용적 기법의 연구를 강화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4. pp. 460-513.
- [2]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박영사, 1994. pp. 321-325.
- [3] 문홍주, *한국헌법*, 서울:현암사, 1987. pp. 273-277.
- [4]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 서울:법문사 1990. pp. 553-628.
- [5]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1994. pp. 366-523.
- [6] 강경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문제”,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연구원, pp. 22~39. 1988.
- [7] 구병삭,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월간 고시*, pp. 22~46. 1990.2.
- [8] 권영호, “국민의 알권리”, *고시계*, pp. 70~78. 1993.12.
- [9] 김민중, “그릇된 정보의 제공과 책임”, *인권과 정의*, 제 190호, pp. 69~83. 1992. 6.
- [10] 김배원, “알권리의 법적성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pp. 157~182. 1990.12.
- [11] 김철수, “정보화와 기본권보호”, *정보화사회와 민주발전*, 통신개발연구원, pp. 1~15. 1987.
- [12] 김한성, “정보화사회의 데이터보호”, 매지 논총 인문사회과학편 제8집,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pp. 1-22. 1991.2.
- [13] 박영호 외, “컴퓨터 범죄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제 4권 2호,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pp. 47~57. 1994.6.
- [14] 안병성,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보호대책에 관하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제 1권 1호,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pp. 25~28. 1994.4.
- [15] 이상덕, “정보사회와 정보”, *통신정책연구*, 제 7권 1호, 통신개발연구원, pp. 2~16. 1992.
- [16] 이승우,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사법행정*, pp. 60~67. 1990.4.
- [17] 이준구, “개인정보의 보호”, *월간고시*, pp. 14~25. 1990.7.
- [18] 황두현,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보사회연구*, pp.100~116. 1993년 가을호.
- [19] 박순백,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3.8.
- [20] 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1.2.
- [21]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정보통신법규해설집*, 대전: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12.
- [22] 조상원편저, *대한민국법전*, 서울:현암사, 1994.

□ 着者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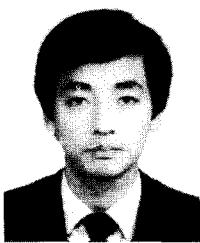
이 선 화



1989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학사)
1991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1991년 2월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연구원

* 주관심분야 : 표준화관련 법·제도분야,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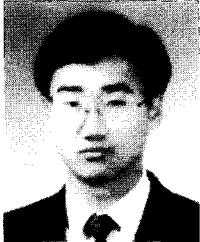
박 기 식



1982년 2월 서울대학교 영어과(학사)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석사)
1995년 8월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박사)
1985년 1월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 실장/
표준 및 기준체계연구 과제책임자

* 주관심분야 : 정보통신정책, MIS분야, 표준화관련 법·제도 분야

신 범 철



1993년 2월 충남대학교 사법학과(학사)
1993년 3월 ~ 현재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